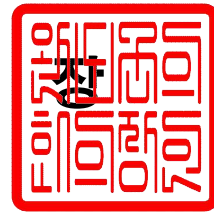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8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

2. 발 의 자 : 박 병 수 의원

3. 제정이유

- 완도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, 농촌관광,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대상지역 및 직불금 지원 등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사업신청 및 현지조사(안 제5조)
- 준용(안 제6조)

5. 관련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4. 2. 28. ~ 2024. 3. 5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 소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<p>「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</p>			
년 월 일			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			
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			

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, 농촌관광,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있으며,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경관작물 등”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(이하 “경관보전직불제”라 한다)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경관작물, 준경관작물, 준경관초지작물을 말한다.
2. “마을경관보전활동”이란 마을경관 가꾸기,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, 지역축제 및 체험·관광 기반 교육·홍보활동 등 마을경관 보전을 위해 마을단위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.
3. “농업인 등”“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”“집단화”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지침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

제3조(대상지역) ① 지역축제 및 체험·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등 식재면적이 최소 0.5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1헥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특성

및 사업효과, 예산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직불금지원 등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마을경관보전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5조(사업신청 및 현지조사) ① 농업인 등은 성명 및 주소, 농지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·면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,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침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